

#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

## 일부개정예규안

### 1. 개정이유

- 개인파산·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파산·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2021. 4. 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“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”에서 “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”로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정정함(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)

### 3.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 일부개정예규안
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의2 중 “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”를 “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80